

절차상의 안전 조치

1973년 재활법 504 조항

학부모는 제 504 조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절차상의 안전 조치의 목적은 귀하에게 이러한 권리를 알리는 것입니다.

귀하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:

1. 자녀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공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;
2. 자녀의 장애 식별, 평가 또는 배치에 관한 통지를 받습니다;
3. 자녀가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장애 학생의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정규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여기에는 비장애 학생과 함께 최대한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. 또한, 자녀가 학교, 학교 관련 및 과외 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얻도록 교육구로부터 합당한 편의를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;
4. 자녀가 장애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시설 및 서비스와 유사한 시설에서 교육받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;
5. 자녀가 재활법 504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정되면 개별화된 평가를 받고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;
6. 평가, 교육 및 배치 결정이 다양한 정보 출처에 근거하며 학생과 평가 데이터 및 배치 옵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내려지도록 하십시오;
7. 학생이 교육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을 경우 발생할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학군이 정한 대체 배치 장소로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으십시오;
8. 귀하의 자녀는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;
9. 자녀의 장애 식별, 평가, 교육 프로그램 및 배치에 관한 결정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, 수수료가 부담되어 기록 열람을 포기할 정도의 형편이 아닌 이상, 합당한 비용으로 교육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.;
10. 장애 식별, 평가, 교육 프로그램 또는 배치와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구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. 교육구

웹사이트에 있는 교육구 균일 불만 처리 정책 (이사회 방침 1312.2)을 참조하십시오;

11. 자녀의 장애 식별, 평가, 교육 프로그램 또는 배치와 관련된 결정이나 행동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를 요청하십시오. 귀하와 학생은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귀하의 비용 부담으로 고용한 변호사가 귀하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. 공정한 청문관은 교육구가 선정합니다. 공정한 청문 결정에 대한 항소는 연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심의 요청은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짜로부터 60 일 이내에 Tim Tatum, 504 조항 준수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. 교육구의 적법 절차 청문회 절차는 학부모/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구 504 조항 준수 책임자에게 제공됩니다. 공정한 청문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연방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.

12. 이 통지는 또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 나이의 학생에게도 제공됩니다.

13. 교육구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인권 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. 남가주 지역을 다루는 지역 사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:

OFFICE FOR CIVIL RIGHTS, REGION IX
U.S. Department of Education
50 United Nations Plaza
San Francisco, Ca. 94102

교육구 504 조항 준수 책임자는 멜리사 디 스칼라 Tim Tatum 박사입니다. 책임자는 교육구가 504 조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자 전화번호는 (949) 936-5171 입니다.

학부모는 절차상 안전조치 (Procedural Safeguards)의 사본을 받았습니다.

학부모 서명

날짜